

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심사 보고서

1993年 11月 4日
總務委員會

1. 심사 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3년 10월 18일 남구청장 제출
- 나. 회부 일자 : 1993년 10월 22일
- 다. 상정 일자 : 1993년 11월 3일 제26회 남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
상정 의결

2. 제안 설명 요지(제안설명자 : 재무과장 유용현)

가. 제안 이유

- 통합공과금 및 지역 의료 보험 등 행정 수요는 크게 증가하였으나 청사 면적이 적고 부지가 협소하여 증축이 불가능한 광안1동사를 이전 신축 하기 위해 새로운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주요 골자

- 매입 예정 부지
 - 위 치 : 광안1동 494-1 대지 307.4㎡(93평)
광안1동 701-41 대지 217.0㎡(65.7평)
 - 용 도 : 일반 주거지역
 - 소유자 : 부산 진구 양정동 401-2 정동호외 1명
- 소요 예산 : 603,060천원(평당 3,800천원)
- 광안1동사 부지 매입을 위하여 제21회 남구의회 임시회시 동의안이 의결 되었으나 매입 과정에서 소유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다른 토지를 다시 동의하고자 하는 것임.

3. 전문위원 검토 보고 요지(전문위원 이무상)

- 1973년 12월 24일 준공이후 20년이 지난 건물로 건축법상 현재로는 증축이 불가능한 실정임.
- 사무실내 면적이 179.52 m^2 로 직원 25명이 근무하기에는 협소하여 대민 행정 수행상 불편 초래
- 간선로변 위치로 주차장 전무
- 구 측지부대 이전으로 아파트 신축에 따른 7,000여명 인구 자연 증가 예상
- 이같은 행정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자 동사를 이전 신축하는 것은 긴 안목으로 볼 때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, 답변 요지

질의자	답변자	질의요지	답변요지
양한석 위원	재무과장 유용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매입 추정 가격이 평당 38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 지역에서 적정한 가격이라고 보는지 ○ 만약 동의후 소유자가 가격이 적어 팔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가격 협의를 위해 등장실에서 만나 협의한 결과 380만원은 현시세 수준이며 소유자가 380만원이 아니면 팔지 않겠다고 함. ○ 소유자가 380만원이 아니면 안 팔겠다고 하므로 별 문제는 없음.
배종환 위원	수영동장 박무길 (전. 광안 1동장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2차례에 걸쳐 동의를 하였으나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3번째 다시 신청한 이유를 설명 바람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1차는 구 측지부대 市有地 매입을 계획하였으나 고지대 변두리라는 이유로 매입되지 못함.

질의자	답변자	질의요지	답변요지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input type="radio"/> 당초와 달리 갑자기 팔지 않겠다고 하는 이유는? <input type="radio"/> 매매를 위한 가계약은 했는지?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input type="radio"/> 2차로 광안1동 694-14번지와 4필지 매입 동의를 하였으나 두사람의 소유자중 1명이 매입에 불응하여 매입치 못함. <input type="radio"/> 소유자가 그곳에 주택을 신축하겠다고 함. <input type="radio"/> 하지 않음.
주만보 위 원	광안 1동장 하 병 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input type="radio"/> 매입하고자 하는 대지에 대해 지금까지의 경위 설명 요망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input type="radio"/>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는 현 동사에서 20m거리이고 현 동사무소앞 20m 도로와 가까울뿐만 아니라, 파출소, 보건소와도 인접한 중앙지점이며, <input type="radio"/> 지주와 협의 결과 386만원을 요구하였으나 380만원으로 6만원을 낮추는 선에서 합의가 된 것임.
배종환 위 원	광안 1동장 하 병 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input type="radio"/> 소유자 정동호씨와 1명은 누구인지 또 승락은 받았는지?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input type="radio"/> 1명은 정동호의 처로 남편인 정동호가 책임을 지겠다고 하여 협의가 이루어짐.

질의자	답변자	질의요지	답변요지
	재무과장 유용현	○ 감정가격이 380만원이하로 결정되면 어떻게 되는지?	○ 당초 광안1동사 부지로 매입 예정이었던 광원아파트의 부지 감정 가격이 350만원으로 결정된바 있으며 현재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광원 아파트 부지보다 시내 쪽이며 위치등으로 보아 충분히 380만원은 결정될 것임.
박수용 위원장		○ 현지 답사 건의	○ 현지 답사 여부 거수 표결 - 동의 : 3명 - 부동의 : 6명으로 현지 확인은 하지 않기로 함.
임종하 위원장	재무과장 유용현	○ 구에서 꼭 필요하면 감정 가격에 상관없이 매입하여야 되지 않는지	○ 공유재산은 행정 절차가 감정 가격과 공시지가로 판단해 보고 매입하는 것이 원칙임.
최경익 위원장	재무과장 유용현	○ 380만원의 감정 가격이 나오지 않으면 매입할 수 없는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○ 매입 가격을 낮출 수는 없는지	○ 현재 시세가 적정 수준이므로 공공용 토지로서 매입하고자 하므로 그 가격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. ○ 토지소유자가 명백히 380만원으로 밝혔으므로 더 낮추기는 곤란함.

질의자	답변자	질의요지	답변요지
양한석 위 원	광안 1동장 하 병 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만약 감정 가격이 375만원 이 나올 경우 광안1동에서 부족분을 자체 부담할 용의는 없는지 ○ 동사 건립 추진위원회 결성 여부는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현재로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우나 추진은 하여 보겠음. ○ 아직 결성되지 못하였으나 앞으로 하겠다.
이태흠 위 원	재무과장 유 용 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감정 가격을 먼저 해 볼수 는 없었는지 ○ 사도가 8평정도된다고 하였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○ 민원의 소지는 없는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의회 승인도 전에 감정을 먼저 해보는 것은 문제가 있음. ○ 사도와는 관계없는 토지임. ○ 개인땅을 이 사람들이 사용 하기 때문에 민원 소지는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주만보 위원장	재무과장 유 용 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감정가격이 390만원이나 400만원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금액이 초과 감정되더라도 380만원으로 조정해서 매입하도록 하겠음.

5. 토론 요지 : 없 음

6. 심사 결과 : 원안 가결

7. 소수 의견 요지 : 없 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